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순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19
----------	------

발의년월일 : 2021. 3. 5.

발 의 자 : 황순자 의원
김규학 의원
김동식 의원
김재우 의원
배지숙 의원
이시복 의원
전경원 의원
하병문 의원
홍인표 의원

1. 제정이유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경제교육 기본계획 (안 제4조)
- 다. 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 라. 경제교육인력양성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시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성별·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장려되어야 한다.

제4조(경제교육 기본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경제교육 전문가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경제교육인력 양성) 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제교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